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

◇ 제 · 개정 이유

생활평가(가·감점) 기준을 신입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,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- 가.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, 훈련교수, 교육운영교수,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(안 제4·5·6·30·31·34조 등)
- 나.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종료 후부터 21:30에서 22:3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하고자 함(안 제35조)
- 다. 생활평가 기준을 신입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(안 제43조, 별표6·7)